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6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8. 2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기업중심의 보조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로 투자활동 촉진
- 보조금 수혜기업의 채권확보 규정 신설로 담보수취·관리용이 및 보증서 담보로 인한 업체의 이행의무 강화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(안 제12조제3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, 제15조제 2항, 제19조제2항제3항)
- 나.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(안 제19조제3항)
- 다. 채권확보 명문화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2)
- ※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(경남도 투자유치단-3300(2014.6.23.)) 개선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규제개혁추진단)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완화함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7. 16. ~ 8. 05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반영함(안 제3조제3항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10년”을 “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10명”으로 “6개월”을 “12개월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10명”으로 “6개월”을 “12개월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3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각각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3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“20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“2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“10년”을 “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채권확보)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10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“1퍼센트”를 “2퍼센트”로 한다.

제20조의2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

지원기준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2조제3항과 제19조제3항 후단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이행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지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12조(입지지원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<u>10년</u>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고용보조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<u>20명</u>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<u>6개월</u>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4조(교육훈련보조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<u>20명</u>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<u>6개월</u>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5조(시설보조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<u>30억원</u>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<u>30억원을</u>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구성하되, 특성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입지지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</u> ----- -----</p> <p>제13조(고용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10명</u>----- -----<u>12개월</u>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교육훈련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10명</u>----- -----<u>12개월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시설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20억원</u>----- ----- -----<u>20억원</u>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국내기업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압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제20조(이전보조금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③ (생 략)</p> <p>제20조의2(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차에 대한 국외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국내기업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20억원----- -----10명-----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50퍼센트----- ----- -----5억원----- ----- -----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2(채권 확보)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(이전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5억원----- -----2퍼센트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의2(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차에 대한 국외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----- -----</p>